

의안번호	2216420
의 퇴 인	고민정 의원
회 답 일	2026. 2. 12.
추 계 번호	26C0518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1조 (경비의 보조)	(제1항)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,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(제2항) 국가는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경비 보조의 우선 지원 지역을 정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 (경비의 보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현행법 제15조의1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

-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1개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에 있음
 - － 시설 설치 시 국비가 투입된 일부 사례¹⁾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비로 설치·운영

1) 울산, 강원 삼척, 전남 강진의 경우 설치 시 국비가, 강원 철원, 강원 화천, 강원 양양, 충남 홍성, 제주 서귀포의 경우 특별교부세가 일부 투입됨

[표 1]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

연번	지역	산후조리원명	개소일	운영형태
1	서울	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	2014-02-27	위탁
2	서울	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	2023-12-01	위탁
3	울산	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	2021-07-26	위탁
4	경기	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	2019-05-03	위탁
5	경기	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	2023-05-02	위탁
6	강원	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	2016-02-16	위탁
7	강원	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	2020-02-24	위탁
8	강원	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	2022-02-01	위탁
9	강원	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	2020-07-13	위탁
10	강원	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	2024-05-24	위탁
11	충남	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	2022-02-07	직영
12	전남	전남 공공산후조리원1호점	2015-09-01	위탁
13	전남	전남 공공산후조리원2호점	2018-05-18	위탁
14	전남	전남 공공산후조리원3호점	2019-06-11	위탁
15	전남	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	2020-12-07	위탁
16	전남	전남 공공산후조리원5호점	2022-03-15	위탁
17	경북	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	2020-09-15	위탁
18	경북	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	2022-10-31	위탁
19	경북	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	2023-12-28	위탁
20	경남	밀양 공공산후조리원	2022-04-29	위탁
21	제주	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	2013-03-29	위탁

자료: 보건복지부

- 개정안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는 경우, 설치될 공공산후조리원의 수와 운영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
 - 현 시점에서는 국비 지원 확대 시 신규로 설치할 시설의 수와 국비 지원 확대로 운영 규모를 확대할 기존 시설의 수, 각각의 재정소요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